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73

발의연월일: 2022. 10. 11.

발 의 자:류성걸・이명수・김용판

임병헌 • 배준영 • 김상훈

정운천 · 김학용 · 김예지

안병길 · 주호영 · 박대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도 적용할계획임.

이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을 "제91조의1 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조(비과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	
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4
의3·제86조의4·제87조·제	
87조의2·제87조의5·제88조	
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 제91조의14, <u>제91조의16부</u>	제91조의16부
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 저	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